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3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이병도·이영실·김화숙·여명·  
이상훈·김기덕·박순규·신정호·  
유용·이광호·김정태·봉양순·  
채인묵·김용연·이광성·김제리·  
김소양·임종국·김혜련·김동식  
의원(20명)

## 1. 제안이유

-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신·출산·양육은 부·모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를 “장애인가정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제4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앞고 모성을 보장받을”을 “앞을”로 한다.

제5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여성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여성장애인”을 각각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u></p>	<p><u>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여성장애인</u>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u>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u>장애인가정</u> ----- ----- ----- <u>장애인가정의</u> ----- -----.</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u>여성장애인</u>”이란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 “<u>장애인가정</u>”이란 부 또는 모가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p>
<p>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여성장애인의</u>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조 (시장의 책무) ----- ----- <u>장애인가정</u> ----- -----.</p>
<p>제4조 (차별금지) <u>여성장애인</u>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p>	<p>제4조 (차별금지) <u>장애인가정</u>----- -----</p>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보  
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  
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  
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 않을 -----  
-----.

제5조 (계획수립 등) ----- 장애인가  
정-----  
-----  
----- 가족정책 -----  
-----.

제6조 (실태조사) ① ----- 장애인가  
정-----  
-----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  
-- 장애인가정-----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장애인가정---  
-----  
-----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실태조사)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차별금지), 제5조(계획 수립 등),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은 ‘여성장애인’ 용어를 ‘장애인가정’ 으로 개정함으로써 부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해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부가 장애인인 가정의 현황을 구하기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0,000천원

###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 (안 제6조)	30,000	-	-	-	-	30,000
	소계(b)	30,000	-	-	-	-	30,000
□총 비용(b-a)		30,000	-	-	-	-	30,000

○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 ≒ 30,000천원

-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5년마다 1회)

= 조사비용×조사횟수

= 30,000천원×1회

= 30,000천원

※ 참고) 실태조사 단가(2018년, 2019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종합실태조사 30,000천원(2019년)

- 청소년실태조사 30,000천원(2018년)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2019년)

- 노숙인실태조사 63,000천원(2019년)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